

「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10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3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8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11월 13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가족복지과 전해순)

가. 제안이유

「아동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4항을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5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6조제6항으로 인용 조문 현행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영옥)

- 본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

검토결과,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”을 “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----- ----- -----.